

의안번호	제 76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조정 등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문단 구성 인원 및 임기 변경(안 제3조)

- 인원: 200명 이내 → 250명 이내
- 임기: 2년 → 2년 이내

나. 분과위원회 설치 변경(안 제6조)

- 신설: 자치경찰분과위원회, 신성장분과위원회
- 통합: 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+복지분과위원회=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- 분리: 공공혁신분과위원회→공공혁신분과위원회,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

다. 조례의 유효기한 연장(안 제11조)

-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2026년 7월 31일까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0명”을 “250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년으로”를 “2년 이내로” 한다.

제6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공혁신분과위원회
2. 재난·소방분과위원회
3. 자치경찰분과위원회
4. 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5. 경제분과위원회
6. 신성장분과위원회
7. 바이오분과위원회
8. 농·어업분과위원회
9. 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
10. 균형발전분과위원회
11. 환경·산림분과위원회

제11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6년 7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과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각 호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2021년 10월 17일까지로 하되,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20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여성·청소년분과위원회</u> 2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3. <u>복지분과위원회</u> 4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5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6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7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 8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9. <u>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 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--- <u>25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2년 이내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공혁신분과위원회</u> 2. <u>재난·소방분과위원회</u> 3. <u>자치경찰분과위원회</u> 4. <u>복지·여성분과위원회</u> 5. <u>경제분과위원회</u> 6. <u>신성장분과위원회</u> 7. <u>바이오분과위원회</u> 8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 9. <u>문화·관광·체육분과위원회</u> 10. <u>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유효기한)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하되,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다.</p>	<p><u>11. 환경·산림분과위원회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유효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7월 31일까지</u>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정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조정 등 「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문위원 50명 증원(200명→250명)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수요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제9조(수당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산출근거(자문수당)

- 2021년 : 100천원 × 50명 × 2회/년 = 10,000천원

- 2022년 이후 : 100천원 × 50명 × 2회/년 = 10,000천원

※ 증원되는 자문위원(50명) 회의참여 시 1명당 자문수당 100천원 소요 예상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 시행 시 '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0,0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: 도비 일반회계 100%

※ 정책기획관실 도정정책 자문수당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자문수당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
6. 작성자 : 정책기획관 신성영